

교원연구년제규정

2011.04.18.제정 2012.08.01.일부개정 2012.12.01.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2.04.29.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에게 국내외에서 연구활동(교과목 포트폴리오 개발활동과 대학발전을 위한 목적사업 수행활동을 포함함)에 전념케 함으로써 전공분야의 신규 영역을 개척하고 심층 연구를 통하여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교원연구년제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 2022.4.29.)

제2조(연구년 기간) 연구년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학기단위로 시행한다. 다만, 교과목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한 연구년제는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4.1., 2022.4.29.)

제3조(자격) ① 연구년제 대상자는 본 대학교 임용된 후 계속하여 7년 이상 근속한 조교수이상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4.1.)

② 연구년제 2회 이상 대상자의 자격은 전회 연구년이 종료된 후 최소한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

③ 정년퇴직시까지의 잔여 재직년수가 3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연구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4.1.)

④ 제1항, 제2항의 근무년수에는 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0.4.1.)

제4조(인원 및 배분) ① 연구년제 교원의 인원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조교수 이상 교원의 10%이내로 한다. (개정 2010.4.1, 2012.12.1.)

② 각 학과(전공)의 연구년 교원의 총수는 매학기 학과 재직 중 교원의 25% 이내로 한다. (개정 2010.4.1.)

③ 학과 재직 교원이 4명 미만인 학과는 1명으로 한다. (신설 2010.4.1.) (개정 2010.12.1.)

제5조(신분 및 처우)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에도 본 대학교 교원신분을 유지한다.

② 연구년 기간중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에서 봉급 이외의 체수당은 연구년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

③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0.4.1.)

제6조(연구년의 시효) 연구년의 시효는 연구년을 부여받은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구년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4.1.)

제7조(신청)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본 대학교에서 공고하는 기간 내에 대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

제8조(심의) 연구년제 대상자는 각 단과대학(학부)별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0.4.1, 2012.12.1.)

1. 연구년으로 인하여 학사업무와 학생지도의 지장 여부
2. 연구년 연구계획의 대학발전과의 연계성
3. 연구년 연구계획의 학문적 적절성

제8조의2(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기관의 범위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 신설 2012.12.1.]

제9조(선정) ① 연구년 교원은 그 수혜시기, 본 대학교 재직년수 및 교원 업적평가 결과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0.4.1, 2012.12.1.)

② 제1조에서 규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으로 해당 목적사업 연구년 대상자는 우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0.4.1.) **(개정 2022.4.29.)**

1. 전공분야의 **신규** 영역 개발 및 **심층** 연구
2. 학과개폐 등에 따른 전공불일치 교원에 대한 새로운 전공분야 연구
3. 본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제10조(연구실적물제출)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4.1.)

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 2022.4.29.)**

1.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에 복귀 후 12개월 이내 논문 1편 게재 또는 복귀 후 24개월 이내 **국제전문학술지(SCI급 또는 SCOPUS)**에 논문 1편 게재
2. 미술, 영상, 디자인, 건축 등의 예능계열은 12개월 이내 광역시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미술관 및 전시관 등 또는 한국화랑협회 등록된 공인된 화랑(외국일 경우 해당국가의 화랑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화랑)에서 실현된 개인전시 또는 발표

③ **연구논문의 게재, 개인전시 또는 발표**는 연구자의 증대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4.1., 2022.4.29.)**

④ 교과목 포트폴리오 또는 **대학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수행** 연구년의 경우에는 연구논문대신 교수학습법에 의해 개발된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목적사업수행결과보고서로 대신한다. (신설 2010.4.1.) **(개정 2022.4.29.)**

⑤ 연구실적물의 연구자는 반드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0.4.1.)

⑥ 연구실적물에는 “이 논문(저서·전시·발표)은 0000학년도 동명대학교 연구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는 “This work was supported by Tongmyong University Research Grant(0000학년도)”라고 명기되어야 한다. (신설 2010.4.1.)

⑦ **외부기관과 중복사사가 게재된 경우에는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4.29.)

제11조(의무)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에는 총장의 승인 없이 교내외의 교육기관에 출강할 수 없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본 대학교 학생 논문지도나 전문분야와 관련된 타 대학교, 연구기관, 학술단체에서의 연구 활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4.1.)

③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수혜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 대학교 에서 의무 복무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연구년기간 동안에 수령한 보수 중 에서 연구년장려금 총액의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0.4.1.)

④ 제10조 연구실적물에 대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은 차후 연구년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연구년장려금 전액을 학교에 반납하여야 하고 각종 교내학술지원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한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

제12조(강의) ①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동안 본 대학교의 강의가 면제되며, 국내 외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소속대학 학과에서 강의대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파견과의 관계) 연구년을 부여받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교원이 국비단기해외파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기관의 단기해외파견에 선발되거나 국내외 교환교수로 파견(6개월이상)될 경우 해당기간에 한하여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휴직과의 관계) ① 질병휴직 또는 무급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이를 감하고 연구년 부여 시기를 계산한다.

② 연구년을 부여받을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교원이 질병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6개월 이상)을 할 경우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휴직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4.1.)

제15조(사무) 본 규정에 관련된 사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0.4.1, 2011.4.18., 2012.8.1., 2018.7.1., 2021.6.1.)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시행하는 연구년 신청교원에게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년 부여시기 3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신청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